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7059 |
|------------|------|

발의연월일 : 2017. 5. 29

발의자 : 김석기 · 이철우 · 윤재옥
김규환 · 정갑윤 · 김정재
강석호 · 박명재 · 주호영
곽대훈 · 김선동 · 송석준
최교일 · 김성찬 · 추경호
김학용 · 김상훈 · 김태흠
홍문종 · 김동철 · 이채익
곽상도 · 조훈현 · 이종배
김성원 · 김성태 · 정우택
이철규 · 김세연 · 원유철
김현아 · 유재중 · 이석현
김두관 · 이완영 · 송희경
문진국 · 정태옥 · 박대출
유승민 · 윤한홍 · 김재경
이은재 · 조원진 · 백승주
배덕광 · 장석춘 · 김승희
박인숙 · 김관영 · 김종회
안상수 · 박맹우 · 이현승
정용기 · 표창원 · 이종구
김한표 · 윤상직 · 이명수
이개호 · 유성엽 · 민경욱
염동열 · 권석창 · 윤상현

이은권 · 유민봉 · 홍철호
박찬우 · 이정현 · 송기석
강석진 · 박덕흠 · 나경원
이 훈 · 김명연 · 이현재
권성동 · 이양수 · 서청원
박순자 · 이종명 · 이동섭
이학재 · 정병국 · 신보라
정양석 · 유의동 · 김순례
윤영일 · 김종훈 · 정종섭
한선교 · 강효상 · 박주선
윤종필 · 김무성 · 전재수
최연혜 · 김도읍 · 강길부
정유섭 · 심재철 · 주광덕
정운천 · 함진규 · 성일종
이주영 · 이장우 · 전희경
김기선 · 이만희 · 김광림
전혜숙 · 최경환 · 조경태
이군현 · 지상욱 · 오영훈
황영철 · 유기준 · 박완수
임이자 · 박지원 · 김종석
여상규 · 홍일표 · 엄용수
정진석 · 원혜영 · 이우현
주승용 · 박재호 · 金成泰
변재일 · 이진복 · 박성중
김정훈 · 윤영석 · 안민석
김성수 · 이철희 · 김병기
손혜원 · 신상진 · 장제원

하태경 · 김부겸 · 서영교
김광수 · 조응천 · 정재호
박광온 · 윤종오 · 경대수
김경진 · 신동근 · 김용태
홍의락 · 백재현 · 이찬열
박정 · 정성호 · 어기구
홍문표 · 강창일 · 이혜훈
박병석 · 윤후덕 · 김철민
인재근 · 오제세 · 최도자
김영우 · 박준영 · 정인화
오신환 · 유동수 · 설 훈
김재원 의원(181인)

제안이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왕조인 신라(新羅)의 수도였던 신라왕경(新羅王京)은 천년 고도(古都)로서 그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곳곳에 산재한 고분과 불교유적 외에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신라왕경 내 핵심유적인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은 옛 신라의 재발견을 통하여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이에 대한 복원·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 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首都)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신라왕궁과 이를 둘러싼 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의 설립·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국가, 경상북도 및 경주시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자료에 관한 강연회·전시회·답사·국제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자료에 관한 복제 및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판매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의 설치) ① 복원·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경상북도 및 경주시로부터의 출연금
3. 개인, 조합,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전년도 이월금
 6.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제11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